

문서번호	안전 관리실 -124
보존기간	10년
보고일자	2024. 02. 15

기안	실장	대표이사
이승영	허윤희	02/15 유인택
본부장 문성진		
협 조		

2024년 「경기문화재단 중대재해 예방」 종합 추진 변경계획(안)



안전 관리실

경기문화재단 주요업무 사전검토 항목 (☑ 또는 ■ 표시)

분류	항목	세부점검 내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업 성과 관리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목적 및 대상이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 정한지 검토하였습니까?	■	□	
		◆ 사업의 결과로 충분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성과계획 적정성	◆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계획과 성과관리 계획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사업관리의 적정성	◆ 예산 집행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검토하였습니까?	■	□	
내부 협업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 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검토하였습니까?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타 관련 법규(법령·조례·규정·규칙 등)	■	□	산업안전 보건법
	부서 협력	◆ 타 부서와 협의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인사 □예산 □계약 □홍보 □대관 □기타 ■공동문제해결을 위한 협업 구조 마련	■	□	
	홍보방안	◆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누리집 □SNS □광고 □홍보물 제작	□	■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	◆ 정보화사업 관련 사전 검토사항을 거쳤습니까?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관련 □정보보안성 사전 검토 이행 □IT-전산 관련 부서 사전 협의 이행	□	■	
	중대재해대책	◆ 안전·보건 위험요인과 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안전규정 □안전교육 □위해요인 □관리계획 □비상계획 □기타	■	□	산업안전 보건법
대외 협력	도의회 협력	◆ 도 또는 의회와 사전 업무공유 및 협의를 검토하였습니까?	□	■	협의내용
	타 기관 협력	◆ 타 기관과 사전 업무공유 및 협의를 검토하였습니까?	□	■	협의기관
	도민 참여	◆ 도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정책토론회 □설문조사 □도민공모 □기타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토론회 □자문위원회 □정책모임 □법률자문 □기타	□	■	
정책 요소	문화다양성 및 사회적 약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타	□	■	
	ESG 경영	◆ ESG 관점(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검토하였습니까? □E(문화로 탄소중립) ■S(문화로 상생공생) □G(문화로 경영혁신)	■	□	
	공공갈등	◆ 이해관계인 파악,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갈등 발생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갈등요소:)	□	■	
	정책 지속성	◆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	■	개
	성인지	◆ 성인지적 관점(성평등 실현, 성인지 감수성, 성 차별적 요인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성별영향평가 검토 사업입니까?	□	■	
	혐오표현 근절	◆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적절한 표현을 검토하였습니까?	■	□	
기타	정보공개	◆ 문서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공개 □부분공개(근거:) □비공개(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인권	◆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 조치 등을 확인하였습니까?	■	□	
	행정순화어	◆ 경기도 공공언어 대체어 및 일본어 두 용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시 : 간담회 → 정담회,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기록관리	◆ 결과를 생산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인쇄물 ■PDF □영상 □사진 □지지씨	■	□	

2024년 「경기문화재단 중대재해 예방」 종합 추진 변경계획(안)

근거(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안전관리실

I

경기문화재단 2024년 중대재해 예방 계획 변경 사유 및 내용

□ 중대재해 예방 계획 변경 사항

- '24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 변경내용
 - 지역문화교육본부 → 지역문화본부 / 경기문화재연구원 →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신규지정

□ 중대재해처벌법 변경사항

- 기존에는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2024. 1. 27. 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대상으로 포함예정 (※ 재단의 경우 2022. 1. 27. 부터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므로 적용 중)

□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

- 중대산업재해

재 해 요 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질병)		

- 중대시민재해

재 해 요 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10명 이상 (동일사고, 3개월 이상 치료)		

-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법 제조 제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분야) 대응**

- **주요내용**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재 해 요 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질병)		

- **의무사항**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분야) 대응**

- **주요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재 해 요 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10명 이상 (동일사고, 3개월 이상 치료)		

- **의무사항**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안전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것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교육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II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추진체계

비전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



목표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3대
추진
분야

경기문화재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리
이행점검

안전보건
인식제고 및
확산

9개
세부
과제

- 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②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대응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 ④ 종사자 의견청취 및 반영절차 마련

- ⑤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확인·평가개선
- ⑥ 비상계획 수립 및 점검
- ⑦ 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 ⑧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 ⑨ 안전·보건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 안전·보건 예방 매뉴얼 안내 등

Ⅲ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① 2024년 경기문화재단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추진목표

- 임직원 및 종사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
- 재단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 관련 사고 “0”에 도전

□ 안전보건 경영방침

-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24.1.2. 선언하여 2024년도 추진

경기문화재단은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임직원과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문화재단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재단은 '근로자와 이용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재단은 확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단 내 모든 시설의 위험요인 제거하여 재해발생을 예방한다.
3. 재단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4. 재단의 모든 임직원과 이용자들은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참여하여 재해 없는 재단이 되도록 만들어 나간다.
5. 재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소통과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이를 위해 재단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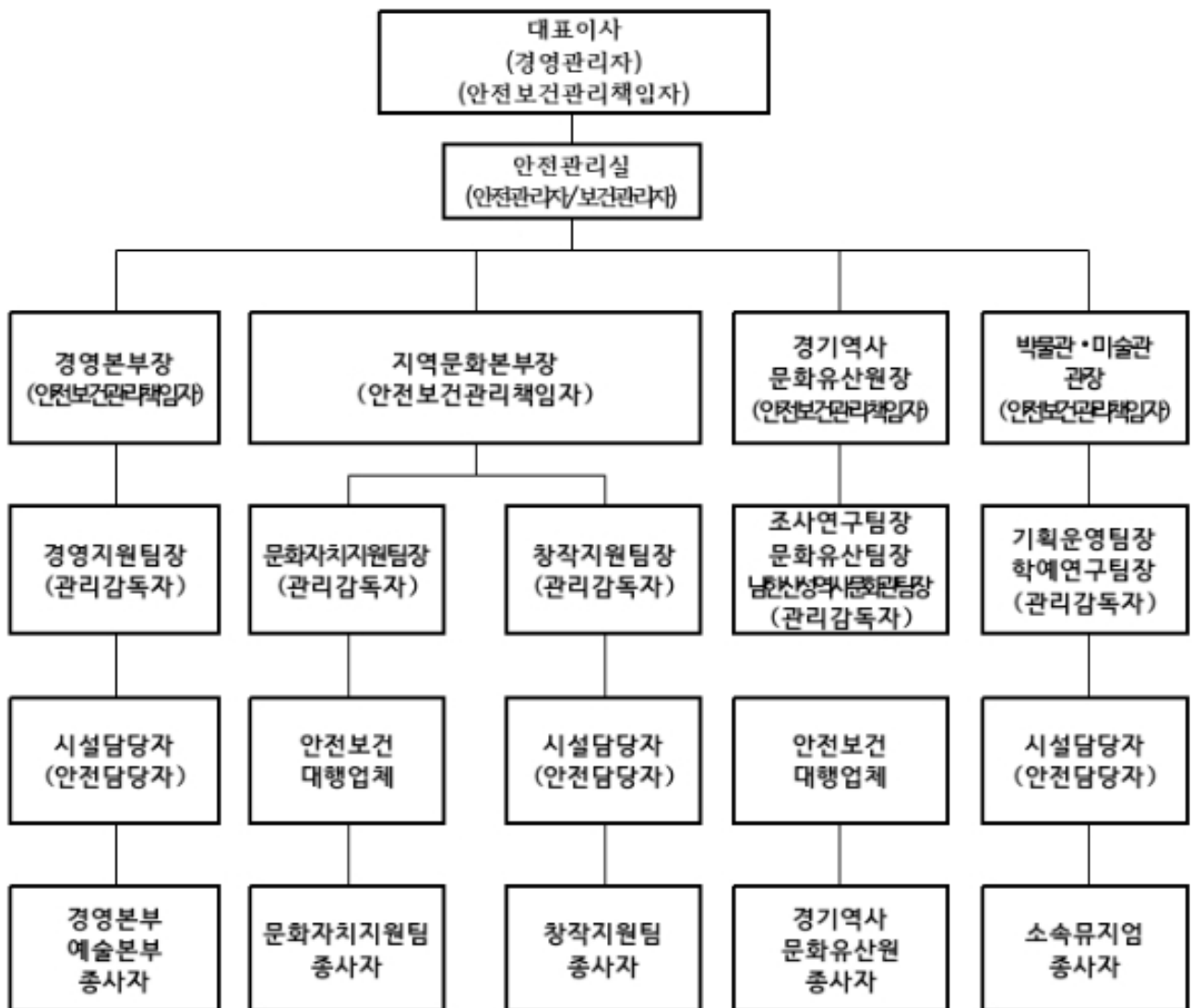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서명)

IV 안전보건 관리 조직 체계 구축

② 2024년 경기문화재단 안전보건 관리 조직 체계

□ 대표이사 직속 안전관리실 주도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 2024년 경기문화재단 안전보건 관리조직 체계('24.2.1.기준)



※ 문화자치지원팀과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안전보건 대행업체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관리

□ 안전보건 관리체계 직무별 역할

구분	담당자	역할(직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대표이사 (경영관리자) 경영본부장 지역문화본부장 경기역사 문화유산원장 각 기관 관장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실장 경영지원팀장 문화지원팀장 창작지원팀장 조사연구팀장 문화유산팀장 남한산성 역사문화관팀장 기획운영팀장 학예연구팀장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유자격자 선임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가 설치된 경우)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자	유자격자 선임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시설관리자	안전담당자	1.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과 안전조치 2.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및 조치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및 조치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및 조치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2022.04.01. 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직속 재난안전팀 신설
- 2024.02.01. 자 안전관리실 명칭 변경
 - 총원 : 3명
 - 구성 : 실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담조직 구성요건에 맞춰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배치

- (역할) 경기문화재단 안전·보건 총괄관리
 -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등 관련사항 조치
 -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 실시
 -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및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확인·관리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 경기문화재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운영
- 경기문화재단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설치
 - (근거)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공공기관담당관)
 - (위원) 10명 이내(종사자 6명, 전문가 3명)로 구성
 - 세부운영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
 - (위촉기간) 신규 위촉일로부터 2년
 - (회의개최) 정기회의(반기 1회)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심의 자문 사항
 - 안전보건 예방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경영방침에 대한 자문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세부 운영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예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 경기문화재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2021년 구성된 경기문화재단 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개편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위원) 12명 이내(사용자 6명, 종사자 6명 등)로 구성
 - (위촉기간) 2022년 신규 위촉일로부터 2년
 - (회의개최) 정기회의(분기 1회), 임시회의(필요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안전보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사항

④

종사자 의견청취 및 반영절차 마련

□ 종사자 상시 의견청취

- 안전관리실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의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

□ 업무용 사이트의 안전보건 제안 게시판 운영

- 안전보건경영방침 게시
-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및 안건 이행사항 등 게시
-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및 재해사례 등 게시
- 아마란스 사내게시판 - 03.커뮤니티 - 직원참여 - 개선제안을 통한 의견수렴

□ 경기상상캠퍼스내 안전보건 제안함 운영

V 안전보건 관리 이행 점검

⑤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평가개선(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 KOSHA-MS 인증

-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 시키는 인증제도
 - 인증기간 : 2024년 인증 취득 / 사후 심사 인증
 - 인증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위험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한 후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 정기평가 일정 : 경영본부와 문화예술본부 및 소속 기관 진행
 - 평가주기 : 연 1회 추진

- 위험성 평가 포함내용
 -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 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밖에 위험성 평가의 시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화학물질 및 MSDS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신규 화학물질 반입 전
 - 취급 예정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선 제출 요청
 - 화학물질 취급자 대상 MSDS 교육 시행
- 사용 중인 화학물질 관리 및 신규 화학물질 반입 후
 - 사업장 내 공정·장소 별 화학물질 사용 현황 파악
 - 파악한 화학물질의 MSDS 갱신 및 작업 장소 게시
 - 화학물질의 소분용기·포장에 경고표시 부착관리

□ 안전인증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 노후된 보호구 파악하여 신규 보호구 교체
 - 각 공정의 유해·위험요소 파악하여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 선정
 - 보호구 착용자, 지급내역 확인하여 노후 보호구 파악 및 교체
 - 노후된 안전용품 파악하여 폐기 후 신규 제품 지급

□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 물리적요인(소음, 진동, 조명), 작업장 안전성평가 등 시행

□ 사업장 순회점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22조)

- 사업장 순회점검
 -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및 관리를 통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 점검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시행

□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점검을 통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시행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57조)**

- 유해요인 조사를 통한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 근골격계 질환자 파악을 통한 추후 건강검진 프로그램 실시

□ **근로자 건강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41조)**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일반, 배치전, 특수 등) 관리
 - 주기별 검진실시 및 사후관리(보호구 지급, 의사소견서 제출 등)
 - 임직원 건강상담 시행(분기별 시행, 우선순위별 상담 진행)
- 근로자 건강증진
 - 직무 스트레스요인 측정,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1회/년) 실시 및 사후관리
 - 전문기관 연계 정신건강증진 사업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법령상 의무사항 준수**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및 점검 등
- 재해예방 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조치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책임**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따르면, 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항의 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안전 시설 등 설치·유지,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를 위반한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또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에서의 안전보건 규정의 준수는 물론 재단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담당인력 배치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과 전담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 대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함”으로 명시했음
- 소방청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21쪽의 1.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부분의 자료에 따르면, 안전인력의 수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수행해야 하는 안전업무(안전점검, 안전관리, 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업무 -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점검,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등)를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꼭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유권해석해 놓았음
- 같은 자료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을 확보했거나, 영업장의 종사자를 활용하여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음
-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은 위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담당자로 각 업무 담당자를 지정 운영함

⑥

비상계획 수립 및 점검

□ 경기문화재단의 재해발생 위험대비 비상계획 수립

- 2022년 수립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조치계획 보완예정
(※ 2022년 경기문화재단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조치계획)

□ 2024년 재해발생 위험대비 비상계획 수립

- 위험요인(도급, 위탁, 용역 등 종사자 포함)을 바탕으로 발생 시 대응 조치
- 재해발생 조치계획 및 사후 대응 계획 포함
-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반기 1회씩 훈련 내용 포함)
- 안전관리실 재단 전체 대응 조치계획 수립
- 재단 종합계획에 기반한 각 본부 및 소속 기관별 계획 수립 조치

< 재해발생 위험대비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포함 내용(예시) >

단계	활동	내용
대비 단계	작업 전 준비활동	- 위험요인 파악 및 인지
		- 안전보건 예방조치
		- 안전장비 보유 현황, 안전시설물 점검 등
		- 응급조치 장비 준비상태 점검
대응 단계	상황 확인	- 비상상황임을 인식(재해발생 또는 재해발생 위험성)
	작업중지 및 대피	- 작업중지 지시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권
	상황전파	- 상황전파 지시(장소, 피해상황)
	구호조치	-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후송 조치(소방서 협조)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대응하는 응급조치 ① 기도 유지 ② 심폐소생술 ③ 지혈, 안정 유지 등 - 외부구조기관(119)에 피해자 인계, 상황 설명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입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가급적 많은 사진을 찍어 증거 보존 -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사고 보고	- 지체없이 노동권익과 전담조직팀 보고(재해조사표 작성) - 관할노동지청 재해발생 보고

□ 합동점검을 통한 대응점검

- 위험요인별로 발생가능한 재해를 검토, 재해발생 대응 매뉴얼 점검, 주기적으로 훈련 실시(반기 1회 이상)

⑦

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 시 안전보건 서류 제출 의무화 시행

※ 경기도 회계과-4625(2022.02.04.)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치계획 안내 >
근거

- 도급·용역·위탁 등 재단의 모든 계약은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화
- 도급·용역·위탁 등 입찰공고 시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화

- 계약시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계약하지 않음
- '안전보건 확보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도급과 관련된 계약업무 세부 운영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사업계획에 안전보건관리계획 반영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대상
 -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행사 등
-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반영 내용
 - 안전보건 관리조직도
 - 담당자 업무분장
 - 비상 상황 발생의 경우 조치사항 및 연락처
 - 비상 발생 시 보고체계
 - 관련기관 연락처 및 연락책임자
 - 유형별 안전보건 대책 수립 및 조치계획
 - 안전사고 발생 대응
 - 응급환자 발생 대응
 - 화재사고 예방 대응

□ 안전보건관리비 편성 시행

- 안전관리실-38(2024.02.07.)호 <2024년 재단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안내>
- 경영본부 경영지원팀 <경기문화재단 계약업무절차 및 운영지침 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산출내역서 작성시 안전보건에 필요한 경비 (4대 보험 및 석면피해 분담금 등) 반영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보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함
 -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
- 도급·용역·위탁 등(파견, 공급·판매업체 포함)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림
- 안전보건 관련 정보 및 장소 제공(휴게시설 등), 공식절차(작업 전 안전 미팅, 제안) 등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훈련에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
-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제거·대체되었거나 통제되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의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하고 개선
- 도급·용역·위탁 등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⑧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 안전보건관리 비용 대상 사업

-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사업(부가세 별도)
 - 공사와 용역을 대상으로 함
 - 물품 제조 및 구매와 학술연구용역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

- 대상사업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의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를 원용하여 적용하고자 함
- 2천만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도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안전보건관리비 편성

□ 안전보건관리 비용 책정

- 재단은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 용역 · 위탁 받은 업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 · 용역 · 위탁 비용에 포함시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액은 총사업비의 1.38% 이상으로 책정함
 - 본 기준은 공연법의 외부 행사비 집행 기준인 1.2% 보다 강화된 것이지만,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총사업비의 평균 2.0% 전후인 점을 고려하여, 건설공사보다는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책정한 비율임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예산 확보

- 2024년 본예산에 안전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안전·보건 예산 반영
- 산업안전보건 온라인교육을 비롯한 근로자 정기교육비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 교육비 등은 안전관리실 예산에 반영함
- 안전보건관리비는 각 본부 및 소속 기관의 사업비 예산에서 집행할 예정임.

□ 안전관리실 안전보건 예산 내역(안)

- 2024년 안전관리실 안전보건 예산 현황

편성목	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계	24,000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 안전물품구입: 10종×200천원×1회=2,000천원 - 안전장구구입: 4명×430천원×1회=920천원 - 회의비: 10명×8천원×6회=480천원 - 위원회운영: 2명×200천원×2회=800천원	4,200
213 교육훈련비	01 교육훈련비	- 전직원: 580명×20천원=11,600천원 - 관리감독자: 20명×20천원=4,000천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명×100천원=1,000천원 - 안전관리자: 1명×400천원=400천원 - 보건관리자: 1명×400천원=400천원 - 전문가교육: 2명×200천원×6회=2,400천원	19,800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지속가능 경영혁신-사회적 가치확산-안전보건경영

VI 안전보건 인식제고 및 확산

⑨ 안전보건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 안전보건 교육

- 대상 : 전체 종사자
 - 총 500명 기준(신규 채용과 사업 확대에 따른 인원 증가 예상분 반영)
- 교육내용(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필수 매뉴얼)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
 - 급박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절차 등
 - 기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경기문화재단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 대상 : 전 임직원(정규직, 운영직, 기간제 포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교육대상 : 경기문화재단 경영책임자(대표이사), 경영본부장, 지역문화본부장, 경기역사문화유산원장, 각 관장
 - 교육일정 : 2024년(전문기관 일정 감안 수강)

대 상	시 간	교육시기	교육내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6시간이 상	- 신규교육 : 선임직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교육

- 교육대상 : 안전관리실장, 경영지원팀장, 문화자치지원팀장, 창작지원팀장, 조사연구팀장, 문화유산팀장, 남한산성역사문화관팀장, 기획운영팀장, 학예연구팀장
- 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 집체 또는 온라인 교육(법적 근거에 의거 진행)
- 교육일정 : 2024. 03. ~ 2024. 12.
-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사본을 안전관리실으로 제출
- 교육비용은 '안전관리실 안전보건교육' 예산에서 집행

구분	대상	시간	교육내용
관리 감독자 교육	관리 감독자	연1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정기교육

- 주관 : 안전관리실
- 대상 : 직속부서와 경영본부 등 각 본부 및 소속 기관
(※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별도 진행)
- 반기 6시간 이상 진행(사무직 반기 6시간이상, 사무직외 12시간)
- 교육비용은 '안전관리실 안전보건교육' 예산에서 집행

구분	대상	시간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 교육	전 직원 (안전보 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제외)	사무직 -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 -반기 1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교육대상 : 신규입사자
- 교육일정 : 채용 시(온라인교육 이수)
- 작업 투입 전, 8시간 교육 모두 이수

대 상	시 간	교 육 내 용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8시간,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예방 네트워크 협력

- 대상 : 소통 네트워크 구축(안전관리실, 경기도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 내용 : 전문가, 안전보건 담당자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사례 공유 등
 - 중대재해 안전보건 정보공유
 - 모범(안전보건 관리 및 대응)사례 벤치마킹 및 공유

□ 경기도 기초 문화재단 및 공연장 운영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운영

- 대상 : 기초 문화재단 등의 안전/보건관리자 운영 기관
- 내용 : 전문가, 안전보건 담당자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사례 공유 등
 - 중대재해 안전보건 정보공유
 - 모범(안전보건 관리 및 대응)사례 벤치마킹 및 공유

VII 기대효과

- 경기문화재단의 안전·보건문화 의식 확산 및 발전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
-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안전과 관련된 제반여건의 체계적 관리
-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
- 경기문화재단의 임직원 및 도급, 용역의 현장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
- 전직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유도 및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VIII 참고자료 - 경기문화재단 시설현황

□ 시설현황(건축물)

건축물명	소재지	규모	준공년 도	주용도	지정고시현 황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10,825㎡(1개동)	1995년	박물관	2종시설물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안산시	8,277㎡(1개동)	2006년	문화 및 집회시설	2종시설물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 용인시	5,605㎡(1개동)	2008년	전시실	2종시설물
실학박물관	경기도 남양주시	2,994㎡(1개동)	2009년	문화 및 집회시설	미지정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 연천군	5,927㎡(1개동)	2012년	전시장, 박물관	2종시설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10,825㎡(1개동)	2010년	박물관	2종시설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경기도 동두천시	5,983㎡(1개동)	2016년	문화 및 집회시설	2종시설물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안산시	16,226㎡(7개동)	1995년	교육연구, 복지시설	3종시설물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16,038㎡(7개 동)	1964년	교육연구시설 외	3종시설물
인계동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14,744㎡(1개동)	1993년	일반업무시설 외	3종시설물

▶ 실학박물관은 준공 후 15년경과 시점부터 지방자치단체(경기도)지정 고시 여부 결정

□ 시설현황(수변전설비)

건축물명	용량합계 (KVA/KW)	변압기(KVA/KW)		비상발전기 설치유무(KW)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용량	제원 / 설치수량		
경기도박물관	1,610	1,250	몰드형 / 3대	360 (1대)	자체선임
경기도미술관	1,750	1,350	몰드형 / 3대	400 (1대)	자체선임
백남준아트센터	1,630	1,450	몰드형 / 3대	180 (1대)	자체선임
실학박물관	700	700	몰드형 / 4대	-	외부대행
전곡선사박물관	1,250	950	몰드형 / 2대	300 (1대)	자체선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1,650	1,250	몰드형 / 3대	400 (1대)	자체선임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820	500	몰드형 / 2대	320 (1대)	외부대행
경기창작센터	1,150	950	몰드형 2대, 유입식 1대	200 (1대)	외부대행
경기상상캠퍼스	950	950	몰드형 / 2대	-	외부대행
인계동사무소	2,700	2,100	몰드형 / 4대	600 (1대)	자체선임

▶ 태양광발전설비는 산정 제외

□ 시설현황(소방설비)